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전국 단일화 및 임시자격 제도 도입 〉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5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오 세 일

목 차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제2215075호)	1
Ⅰ. 제안경위	1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Ⅲ. 검토의견	3
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전국 단일화(안 제24조제1항)	3
2. 택시운수종사자 임시자격제도 도입(안 제2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9
3.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임시운전자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부여(안 제 25조제2항 신설)	17
4.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플랫폼운수종사자 현황 통보의무 부여(안 제49조 의9)	20
※ 참고자료	23

□ 안태준의원 대표발의(221507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태준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 운전자격시험은 버스, 화물차와 달리 시험과목에 지리숙지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16개 시·도로 구분되어 자격시험을 운영 중으로 택시 운수종사자가 거주지 변경 등으로 사업구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자격증을 재취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택시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시험응시 및 교육이수 절차로 인해 택시업계 구인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지리숙지도의 경우 최근 네비게이션 및 플랫폼 택시의 보급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저하되고 있어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시택시운전자격의 경우 '20년 이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운영되어 법제화를 통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택시 자격시험에서 지리숙지도를 폐지하여 자격시험 및 자격증을 전국 통합으로 운영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거주지 변경으

로 인한 사업구역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법인택시 또는 플랫폼운송사업 구직자에 대해 임시 운전자격을 1회(90일)에 한하여 허용함으로써 택시 운전자격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택시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전국 단일화(안 제24조제1항)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시·도별로 구분하여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국가 자격으로 단일화하고, 택시운전 자격시험 중 지리 숙지도(熟知度)에 관한 시험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 ----- ----- ----- -----.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는 것	1. 2. (현행과 같음)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 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3. <u>국토교통부장관이</u> ----- ----- <u>법령</u> -----

현행	개정안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u>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 ⑤ (생략)	-----<u>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u>-----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시운전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현행법령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택시운송사업²⁾의 운수종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제52조 등(참고2. 참조)
-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함.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 구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참고1. 참조)

	종류	세부업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제도는 다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이하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도와 비교하여, 자격시험 시행주체, 자격시험 과목, 자격부여 주체, 자격의 효력 범위 등이 다름.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은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며, 취득한 자격은 해당 관할 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됨.

반면,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을 부여하며, 취득한 자격은 전국에서 효력이 인정됨.

따라서,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을 취득한 해당 시·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시·도에서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 새로이 자격을 취득하여야 함.

자격시험 과목에 있어서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는 지리 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버스운전 자격시험에는 지리 과목이 아니라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³⁾.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제도 】

구 분	택시운송사업	그 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격부여 주체	각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효력 범위	각 시·도 관할 내	전국
자격요건	• 18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 • 해당 사업용 차량과 동급 이상 차량 운전경력 1년 이상 •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 택시운전 자격시험 합격	• 버스운전 자격시험 합격 ⁴⁾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자격시험 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요령, 운송서비스	
	지리(地理)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제52조	

이와 같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제도의 시·도별 자격 구분과 지리 숙지도 평가방식은 정해진 노선으로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여 안전성이 중요한 자격 요소가 되는 버스운수종사자와 달리, 사업구역 내에서 정해진 노선 없이 소수의 여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택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로써 오래 전부터 유지되고 있음.

그런데, 네비게이션과 운송플랫폼 기반의 택시 영업이 보편화되어 지리 숙지도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요소로서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낮아졌음. 따라서, 택시운전자격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성도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4)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 택시운전 자격시험 대상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호)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이탈이 심화되고 젊은 층의 유입은 원활하지 못하여 택시업계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지명(地名)을 암기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현행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제도는 젊은 층이나 타 지역 출신 구직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택시업계 인력난을 가중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택시운전 자격시험 지리과목 시험 예시 】

문제 지하철 3개 노선이 환승될 수 있는 역으로 옳은 것은? ① 잠실역, 천호역 ② 북정역, 시청역 ③ 신도림역, 사당역 ④ 동대문역사공원역, 왕십리역 정답 ④ 해설 잠실역 : 지하철 2호선 및 8호선, 천호역 : 지하철 5호선 및 8호선 북정역 : 지하철 8호선 및 분당선, 시청역 :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신도림역 : 지하철 1호선 및 2호선, 사당역 : 지하철 2호선 및 4호선 동대문역사공원역 : 지하철 2호선, 4호선 및 5호선 왕십리역 : 지하철 2호선, 5호선 및 분당선	문제 병원과 행정구역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국군수도병원-오산시 ② 다나국제병원-의왕시 ③ 성빈센트병원-수원시 ④ 신천연합병원-성남시 정답 ③ 해설 국군수도병원-성남시, 다나국제병원-오산시, 신천연합병원-시흥시
---	---

자료 : 국토교통부

이에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단일화하고, 택시운전 자

격시험 중 실효성이 낮은 지리과목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현행 제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선함과 아울러 택시업종의 진입 문턱을 완화하여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2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 자격 부여 및 자격시험 시행 주체를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할 경우,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시·도지사’가 운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5항⁵⁾이나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 취득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2조제3항⁶⁾ 등 관련 조문을 연계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지리숙지도 시험폐지는 실시간 교통정보의 내비게이션 사용과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감안 시 시험 변별력이 떨어져 개정 취지에 공감함.

전국통합 자격증 운영으로 종사자의 사업구역 이동 시 자격 재취득 불편이 해소됨.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 임시자격제도 도입(안 제24조제6항·제7항 신설 등)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현행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18세 이상으로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년 이상 운전경력이 있을 것)을 갖추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른 자격요건(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자격시험)을 구비하지 않더라도⁷⁾ 국토교통부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장관이 1회에 한하여 90일간 효력을 가지는 임시운전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운전자격을 가진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수종사자의 결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의2(교통안전체험 등 교육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이수할 것
 -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운수종사자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임시운전자격을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6항·제7항 신설 및 안 제87조·제9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u><신설></u>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u>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사자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임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전자격의 유효기간은 임시운전자격 부여일로부터 90일로 제한하고, 유효기간 중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⑦ 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의 운영조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u>	제87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u> -----

현행	개정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부정한 방법으로 <u>제24조제1항</u>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u>제24조제3항 또는 제4항에</u> 해당하게 된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제26조제1항 또는 제49조의8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 ~ 8. (생략) ② (생략) ③ <u>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u>는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나 정지에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4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략) 6. <u>제24조제1항</u>의 운수종사자의 요건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u>-----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토교통부장관</u>은----- ----- ----- ----- -----. 제9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24조제1항 또는 제6항</u>-----

현행	개정안
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 ----- -----
6의2. ~ 16. (생략)	6의2.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임시운전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부여되는 임시운전자격부터 적용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가 택시 업체에 취업하여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⁹⁾ 택시운전 자격시험(신청-응시-합격)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발급받고,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취업 후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소정의 신규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약 2개월이 소요됨.

그런데, 안 제24조제6항에 따른 임시 택시운전자격제도에 따르면, 법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제52조 등(참고2. 참조)

9)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 시행 및 자격 부여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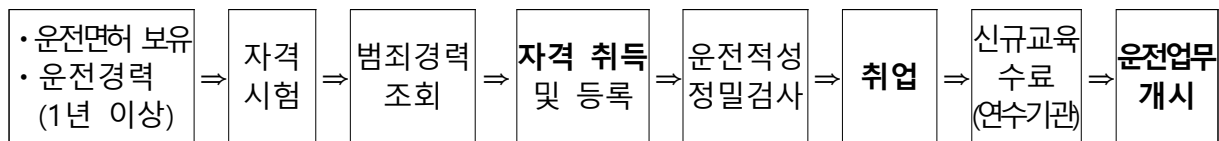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⑤ 시·도지사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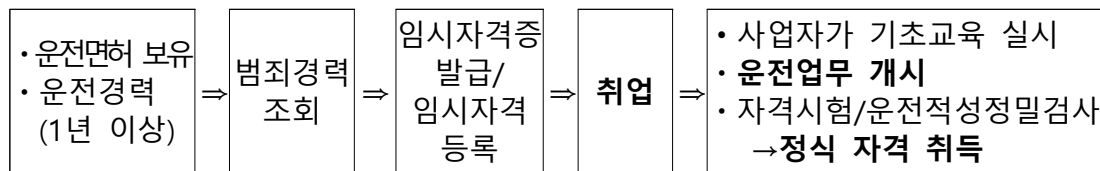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의 실시 및 자격 수여

죄경력 조회를 거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먼저 취업을 한 후 90일 이내에 자격시험 등을 거쳐 정식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선취업-후취득) 택시 업체의 구인이나 택시 운전업무 종사를 원하는 자의 구직이 모두 쉬워짐.

【 현행법령에 따른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



【 개정안에 따른 임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절차 】



참고로, 개정안과 같은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2020년 이후, 플랫폼을 기반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¹⁰⁾ 업계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실증특례¹¹⁾) 또는

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2.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운송플랫폼을 확보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제49조의11에 따른 소속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점에 의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운송플랫폼을 통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사업

11) 실증특례 제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임시허가¹²⁾)를 활용하여 한시적 유효기간 내에서¹³⁾ 실시하고 있음.(참고3. 참조)

국토교통부는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시행상 사고 증가나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아 안정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젊은 운전기사의 유입 효과도 인정하고 있음.

【 임시 택시운전자격 실증특례 개요 】

- ICT 샌드박스('20.9~)를 통해 플랫폼운송·가맹사업에 한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를 취업 후 3개월 이내 진행토록 허가
 - * 실증특례 참여업체: 전국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KM솔루션·DGT모빌리티·VCNC, 진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 4개社, 파파모빌리티·코엑터스 등 플랫폼운송사업자 2개社
- '20.7~'25.3. 기간 중 임시운전자격으로 9,031명(2,449명/年)이 법인택시에 입사했으며, 이 중 4,917명(54%)은 자격 취득 및 택시업 종사(입사기준 평균 51.0세, 약 12개월 근로)
 - 법인기사 평균 연령이 60.5세임을 감안 시, 임시운전자격을 통해 젊은 기사 유입中

자료 : 국토교통부

-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허용함.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함.

(정부 규제샌드박스 포털 <https://www.sandbox.go.kr/sandbox.Main>)

12) 임시허가 제도(「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로서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때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하고 관계 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함.

(정부 규제샌드박스 포털 <https://www.sandbox.go.kr/sandbox.Main>)

13)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최대 2년) 연장 가능

개정안은 이처럼 실증특례를 통하여 안정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동 제도를 법정 제도화하여 안정적 시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법제적 측면에서, 안 제24조제6항 후단에서는 임시운전자격의 유효기간 중 현행법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임시운전자격을 즉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시운전자격의 취소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안 제87조와 중복되므로 조정이 필요해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임시 택시운전자격은 '20년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운영되어 젊은 종사자 유입 등 효과가 확인된 바, 택시업계 구인난 완화를 위해 법제화에 동의함.

단기적 인력수급은 허용하되 여객안전 확보를 위한 엄격한 결격사유 관리, 임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무 및 안전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마련함.

3. 운송사업자에게 택시 임시운전자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부여(안 제25조제2항 신설)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송사업자에게 임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자세 및 안전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신설>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송사업자는 제24조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의 자세 및 안전 등 운전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살펴본 안 제24조제6항에 따라 임시운전자격자는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만큼, 안 제25조제2항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임시운전자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기초적인 교육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최소한의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운수종사자를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 규정¹⁴⁾에 따르면, 안 제24조제6항에 따른 임시운전자격자도 운수종사자에 해당하며,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전업무 개시 전 교육 이수 의무의 적용대상이 됨.

따라서, 안 제25조제2항은 임시운전자격자에 대해 현행법 제25조제1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항에 따른 교육 이수 의무와 별개의 또 다른 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간소화한 절차와 요건으로 정식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임시운전자격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보임.

다음으로, 개정안에서는 안 제25조제2항에서 운송사업자에게 임시운전자격자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교육의 시기·방법·절차, 교육이력의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하위 법령에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임시운전자격자는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여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임시운전자격자에 대한 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현행법 제25조제1항과 같이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임시운전자격을 갖춘 운수종사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만큼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무 및 안전교육 책임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함.

4.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플랫폼운수종사자 현황 통보의무 부여 (안 제49조의9)

가. 검토의견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현황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2조15)를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하 “플랫폼운송사업”)16)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플랫폼운수종사자17)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플랫폼운송사업의 결격사유, 플랫폼운송약관, 명의이용 금지,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사	제49조의9(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 ----- -----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운송플랫폼과 자동차를 확보(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제34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운송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17) 플랫폼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7제7호)

업을 하는 플랫폼운송사업의 경우 행정기관이 플랫폼운수종사자에 관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행법상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자격¹⁸⁾에 관한 감독 체계에 미비한 점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해서도 현행법 제22조를 준용하여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현황을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나. 국토교통부 의견

플랫폼운송사업 분야에서도 임시운전자격 관리와 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4

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8(플랫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플랫폼운수종사자는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 나. 신도시, 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여 교통불편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규제특례를 받아 운행 등 실증과정을 거친 지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3호 또는 제4호(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운전 적성(適性)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 등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취득할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할 것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 교육의 이수 및 자격의 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형법」 제332조(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하여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운전경력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6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득 제한)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2.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가.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노선운송사업자가 실시하는 경우 운행실습이 80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이수할 것

다.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

2)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을 것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55조에 따라 운전자격을 취득할 것

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운전자격시험에 합격

나.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한다.

③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특별검사 및 자격유지검사로 구분하되,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신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

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자.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외한다.

다.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로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신규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2. 특별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

가.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자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

다.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3. 자격유지검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70세 이상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④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운전적성정밀검사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에 한정한다)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관의 적성검사(신체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과거 3년간 중상 이상의 사상(死傷)사고를 일으킨 사람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⑥ 운전적성정밀검사 및 제5항에 따른 적성검사의 항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3항제3호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50조(운전자격의 취득) ①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 시험(이하 “운전자격시험”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택시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운전자격시험(이하 “버스운전 자격시험”이라 한다)

- ②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이하 “교통안전체험교육”이라 한다)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다.

제52조(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및 시험과목 등) 운전자격시험의 실시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버스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교통사고 유형, 자동차관리 요령, 안전운행 요령 및 운송서비스(운전자의 예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2. 택시운전 자격시험

가. 실시방법: 필기시험

나. 시험과목: 교통 및 운수관련 법규, 안전운행 요령, 운송서비스 및 지리(地理)에 관한 사항

다.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을 것

제55조(운전자격의 등록 등)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격시험을 실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② 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각각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수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운전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운전자격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적은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버스, 택시) 운전자격증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 모바일 운전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참고3

임시운전자격 실증특례 실적('25.2 기준)

□ 실증특례(9개 업체 신청)

- (택시) 택시단체(2개): 전국택시연합회·서울법인택시조합
Type2플랫폼가맹(4개): KM솔루션·DGT모빌리티·VCNC·진모빌리티
- (Type1플랫폼운송(3개)) 코엑터스·파파모빌리티·피플모빌리티

□ 실증특례 실적('20.7 ~ '25.3)

- 임시운전자격으로 9,031명(2,449명/年)이 법인택시에 입사했으며, 이중 4,917명(54%)은 자격 취득 및 택시업 종사(입사기준 평균 51.0세, 약 12개월 근로)

* (참고) 법인기사 평균 연령이 60.5세임을 감안할 때, 임시운전자격을 통해 젊은 기사 유입중

- 자격 취득자의 평균 소요 기간은 2개월 이내(적성검사: 56일, 시험: 59일)

< 연도별 임시운전자격 실적 >

구분	계	최근 3년 평균('22~'24)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3
임시 참여(명)	9,031	2,449	194	641	2,032	2,745	2,569	850
후속 종사(명)	4,917	1,426	132	291	1,076	1,699	1,504	215
(%)	54%	58%	68%	45%	53%	62%	59%	25%

< 실증특례 기관별 실적 >

구분 (실증특례 기관)		임시자격 참여자(명)	자격 취득 후 종사자(이직 가능)			
			종사자(명)	종사/참여 율	참여 평균연령(세)	평균 근속기간
계		9,031	4,917	54%	51.0세	352일
택시 (6)	KM 솔루션	3,544	2,035	57%	48.8세	328일
	DGT 모빌리티	880	394	45%	48.4세	306일
	VCNC	64	30	47%	48.7세	677일
	진 모빌리티	4,096	2,347	57%	53.3세	385일
	전국택시연합회	124	54	44%	50.0세	82일
	서울택시조합	59	22	37%	49.2세	79일
플랫폼 운송사업 (3)	코엑터스	76	12	16%	56.0세	295일
	파파 모빌리티	188	23	12%	50.6세	407일
	피플 모빌리티	-	-		-	-

* 범죄경력으로 인한 결격자 : ('22년) 23명, ('23년) 16명, ('24년) 10명

자료 : 국토교통부

참고4**플랫폼운송사업 업체 현황(2025. 6월 기준)**

사업자명	서비스명	허가일자	허가대수	서비스내용
코엑터스	고요한M	2022.01.01	100대	청각장애인 고용을 통한 여객 운송 서비스
레인포컴퍼니	LANE4	2022.01.01	220대	고급차량을 이용한 B2B 구독서비스 등
파파모빌리티	파파	2022.01.01	200대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등
피플모빌리티	Beeline	2024.01.15	30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B2B 서비스
블랙강남 모빌리티	㊸	2025.02.01	30대	강남·서초 구독회원 단거리 운송

자료 : 국토교통부